

제 출 문

문화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재수리 경력·실적관리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규제영향분석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연구기관명 : (사) 한국건축역사학회

연구책임자 : 김 왕 직 교 수(명지대학교)

연구원 : 정 정 남 연구교수(경기대학교)

김 상 협 연구교수(명지대학교)

조 현 정 연구교수(명지대학교)

신 지 혜 연구원(경기대학교)

김 대 성 연구원(명지대학교)

최 주 희 연구원(명지대학교)

박 지 영 연구원(명지대학교)

신 승 윤 연구원(명지대학교)

이 영 섭 연구원(명지대학교)

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	1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2
1. 규제의 필요성	2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0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0
Ⅱ.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보완	13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3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4
1. 규제의 필요성	14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0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20
Ⅲ.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25
I. 분석대상 규제개요	25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26
1. 규제의 필요성	26
2. 타법규제영향분석 및 비교분석 및 비교	28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9
Ⅳ.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	61
I. 분석대상 규제개요	61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62
1. 규제의 필요성	62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64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64

표 차례

<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2013.05.10기준)(단위:명)	2
<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2013.05.10기준)(단위:명)	2
<표 3> 타법비교표	3
<표 4> 신구조문 대비표	13
<표 5>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15
<표 6> 참고자료 : 관련 타법령과의 비교	19
<표 7>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2013.09.30기준)(단위:개)	21
<표 8> 신구조문 대비표	22
<표 9> 하위조문	22
<표 10> 경영평가액 타법비교	28
<표 11> 경영평점 타법비교	28
<표 12> 참고자료 : 관련 타법령과의 비교	39
<표 13>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보유여부 현황 (2013 년 현재)	54
<표 14> 신구조문대비표	56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규제사무명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박왕희, 김성도, 정춘호 ○ 한국건축역사학회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약 8,123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예비	약 10,000명		"						
		기술자·기능자									
관련부처	문화재청/ 16개 시·도		-		"						
5.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 제도(안 제13조의2)의 실효성을 위하여 거짓 신고 시 행정처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문화재수리분야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와 같이 경력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공사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적정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법규를 신설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 경력신청 ↓										
	- 접수 - 심의/결재 - 전산처리 ↓										
	- 경력증발급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들의 경력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적인 경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행 법률에서는 기술자기능자들이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중복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경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등록기준에 필요한 기술인력 외 기술자기능자들의 자격증 대어나 중복취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힘들고,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 규모나 중요도와 관계없이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등에서 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제도 운영 중이며 각 기술 등급에 따라공사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안을 운영중임.

〈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2013.05.10기준)(단위:명)

종 별	보수	단청	실측	보존	조경	식물보호	총 계
인 원	593	491	77	101	213	65	1,540

〈표 2〉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2013.05.10기준)(단위:명)

종 별	도금공	드잡이공	박제및표본공	번와와공	보존과학공	보존과학공(보존처리공)	보존과학공(훈증공)	세척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제작와공	조각공	조각공(목조각공)	조각공(석조각공)	조경공	철물공	철공	표구공	한식목공	한식목공(대목수)	한식목공(소목수)	한식미장공	한식석공	한식석공(가공석공)	한식석공(쌓기석공)	화공	총 계
인 원	132	404	35	541	90	371	39	85	156	266	10	196	64	35	432	21	324	98	735	430	50	395	655	131	194	694	6,583

1-2. 규제 신설 · 강화 필요성

- 문화재수리분야에서도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면 공사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적정 경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경력별 기술인력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인력수급계획이나 기술자 우대·보호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화재수리업계에서도 체계적으로 직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기술자·기능자들 또한 경력을 공인받을 수 있음으로써 스스로의 경력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표 3〉 타법비교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문화재 수리법
제3장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u>
<p>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2. 하도급 계약서 사본 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2005년 7월 1일 이후에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 중 어느 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사본 	<p>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p> <p>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등급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시 제출할 자료,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u>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p>(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p> <p>라. 사업자등록증 사본(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자에 한해 입사신고 시 제출)</p> <p>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이 경우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이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상 지역가입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p> <p>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p> <p>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p> <p>4. 발주청(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에 의한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내지 제16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법,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 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수탁기관에 감리원배치현황을 통보(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경력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청 확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가.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 사본</p> <p>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서 사본</p> <p>다.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급한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감리원경력 확인서(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등이 통보한 감리경력에 한한다)</p> <p>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p> <p>③ 건설기술자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p>	<p>기술등급)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등급” 이란 별표 제(령 13조의2-A)호 서식과 같다.</p> <p>②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문화재청장 고시로 정한다.</p> <p><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u></p> <p>제5조의 3(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신고)</p> <p>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이라 한다) 중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이하 “경력 등” 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규칙 13조의2-A)호 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규칙 13조의2-B)호 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법 1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규칙 13조의2-C)호 서식의 경력확인서[업체 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경력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 혹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5. 출신학교가 외국대학인 경우 국외학위신고필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	--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

<p>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야간” 이 표기된 졸업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p>④ 건설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이하 “부도” 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 제2호에 의해 퇴직사실이 확인되는 날로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05년 7월 1일 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쇄등기부등본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이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p>⑤ 건설기술자는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7. 사진 2장 8. 문화재수리관련 교육, 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p>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한 신고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를 작성 및 발급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별지 제(규칙 13조의 2-D)호 서식과 같다.</p>
--	--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건설기술자는 소속했던 회사에서 퇴직(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입사를 신고한 경우에만 한한다) 후 연락두절(소재지 불명을 포함한다)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거부로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의 내용증명서
2. 제1호 내용증명서의 배달증명서류
3. 제1호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소재지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경력관리수탁기관은 내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2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⑦ 건설기술자가 영 별표 1 비고 다목 규정에 따라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참여사업명(부대명)·직무분야·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직위를 인정한다.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시설감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⑧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기록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여야 하는 감리원경력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와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⑩ 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6조의3 절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경력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⑪ 건설기술자가 신고경력을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정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정범위 :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의 기술경력. 다만, 그 기간 내에 준공일이 있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경우 그 공사기간에 따른 경력도 인정한다.

2. 적용범위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제16조제2항에 의한 발급서류

⑫ 제11항에 따라 신고경력이 국외경력인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52호의2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경력인정 방법 및 신고 자료의 검증

제11조(기술등급 및 경력 인정방법) ①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한 사람(중전규정에 따라 경력 등을 신고한 기술자격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또는 규칙 제38조제2항 별표 1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등급을 부여한다.

② 영 제4조 별표 1 및 제104조제1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규칙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규칙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삭제

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건설기술자는 경력(변경)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p>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p> <p>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경정의 신청) ① 건설기술자는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신설 강화 규제 내용
- 현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기술등급에 대한 사항이 없음
- 신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근거하여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의 기술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등급”으로 별표 제(령) 13조의2-A)호 서식과 같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분석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신고 신청할 때에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과 관리에 발생하는 행정부담 외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편익 분석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활용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기술등급 적용 및 경력관리고 문화재수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제출건수: 총11건
- 제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6명, 문화재수리기능자 5명
- 주요내용
- 기술등급 적용 이후 등급별 참여현장 제한이 가능해야함
- 현장소장보다 경력이 있는 감리 배치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어 경력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기술등급 적용 이후 등급에 따른 현장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문화재수리공사 품질 향상이 기대됨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보완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보완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규제사무명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박왕희, 김성도, 정춘호 ○ 한국건축역사학회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약 8,123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예비	약 10,000명		"						
		기술자·기능자									
관련부처	문화재청/ 16개 시·도	약 300명		"							
5.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 제도(안 제13조의2)의 실효성을 위하여 거짓 신고 시 행정처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일정기간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법률 위반										
	↓										
	- 청문(문화재청)										
↓											
- 처분(문화재청)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등은 자격취소가 되고 문화재수리 중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기준이 정해져있으나 경력 거짓 신고의 경우는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이는 행정질서를 해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행정처분기준에 더하여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자격정지 수준의 법률 강화가 필요함

※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 2(자격취소 등),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주택법 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등 타 법령에서도 자격취소, 자격정지 제도를 운영중임

1-2. 규제의 신설 · 강화 필요성

- 자격취소, 자격정지의 규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계승하였고, 신설된 내용 또한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가 갖거나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며 문화재수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내용임
- 따라서 공사의 질적 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 문화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행위이행의 확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필요함

Ⅱ.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보완

〈표 4〉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제정안
<p><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u></p> <p>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들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p>	<p><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u></p> <p>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현행과 같음) <p><u>8의2. 제13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 10. (현행과 같음)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p><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u></p> <p>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u></p> <p>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Ⅳ.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보완

〈표 5〉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 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Ⅱ.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보완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차. 법 제13조의2 제 3항을 위반하여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의 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카. 문화재수리공사보고서에 공사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의 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8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 (2) 석조건축물
 -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 (4) 불상·벽화·패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2. 대안검토 및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의 검토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하는 규정으로 행정적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안검토 불필요

2-2.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 없음
- 편익
 - 이 규제의 편익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편익을 총체적으로 계산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규제는 부실수리를 예방하고 문화재수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에 필수적인 사안이고, 모든 기술자 및 기능자에게 적용되고 있고,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기술관리법)과 타 법령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규제집행이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 의견 없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규제를 실행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제도(안 제13조의 2)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제재하는 규정으로 공사 관련 유사 법령(건설기술관리법)과 타 법령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별도의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음

Ⅱ.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보완

〈표 6〉 참고자료 : 관련 타법령과의 비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p> <p>9.·10. (생략)</p>	<p>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1. 제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p> <p>2. ~ 14. (생략)</p>	<p>—</p>	<p>제10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6조의4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별표 3]</p> <p>법 제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p> <p>-1차 업무정지 6개월</p> <p>-2차 업무정지 12개월</p>

3.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3.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규제사무명	○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보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박왕희, 김성도, 정춘호 ○ 한국건축역사학회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재 수리업자	425개 업체(' 13.9.30 현재)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문화재 수리업자	425개 업체(' 13.9.30 현재)		"						
	관련부처	문화재청/ 16개 시·도	-		"						
5.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 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수리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공시하고자 함.										
6. 종전규제 및 신설 (강화)규제의 내용	○ 문화재수리등의 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문화재청장 또 는 위탁받는 기관에게 이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평가 신청서·정보 관리활용 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문화재수리업자)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제출서류 확인(문화재청)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처분(문화재청) </div>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임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 분야에서도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수리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공시하고자 함

※시공능력평가제도는 '62년에 도입된 도급한도액제도가 1997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외국업체로서는 시장진입장벽으로 간주되어 동 제도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로운 형태의 업체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됨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서는 관련 협회에서 실적 등 계약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공하고 있음

〈표 7〉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현황 (2013.09.30기준)(단위:개)

업종별	문화재수리업 (8개업종)								문화재 실측 설계업	문화 재감 리업	계
	종합문화재 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7개업종)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업	단청 공사업	목 공사업	석 공사업	번와 공사업			
합계	198	58	43	40	5	0	4	1	57	19	425

1-2. 규제의 신설 · 강화 필요성

- 문화재수리분야에서도 공공공사 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의 개략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어 최적의 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실적 등의 관리를 통한 수리능력을 평가·공시함으로써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안정적인 경영, 기술능력 확보, 신인도 제고 등을 유도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결과물인 시공능력평가액은 각종 공사의 입찰·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표 8〉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제정안
<p><신설></p>	<p>제14조의2(문화재수리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문화재수리등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등의 능력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 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수리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전년도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 방법, 신청, 신고 시기 및 신고 시 제출할 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표 9〉 하위조문

<p>제11조의2(문화재수리등의 능력 평가방법) ① 법 제14조의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리 등의 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문화재청장이 제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적, 기술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리 등의 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6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 또는 위탁받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4조의2제3항 또는 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위탁기관 홈페이지 등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p> <p>④ 법 제1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실적, 기술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의 고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2. 타법규제영향분석 및 비교

2-1. 시공능력평가

○ 공사실적 평가액

<p>건설 산업 기본법</p>	<p>■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의 연평균액의 75/100</p> <p>▶ 건설공사실적: 일년간 매출금액 (일년동안 공사를 하고 발주자, 시행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기성실적금액, 기성실적금액에 선급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실적신고시 1차-공사실적 관계서류와 2차-재무제표 관계서류를 통해 산정함.</p>
<p>전기공사사업법</p>	<p>■ 공사실적평가액 = 연평균 공사실적액</p> <p>▶ 평가기준 공사사업 영위기간 3년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공사사업 영위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당해기간의 공사실적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공사사업 영위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당해기간의 공사실적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 공사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 : 당해기간의 공사실적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실질자본금</p> <p>▶ 인정범위 : 전년도에 시공하여 기성된 공사실적(하도금액과 미기성액은 포함되지 않음)</p> <p>- 전기공사 중 당해 발주자가 증명하고 유형별 첨부서류로 입증된 기성금액 - 공사비가 외화인 경우에는 수령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한 금액 - 공사업을 양도, 승계, 합병할 경우 종전의 공사사업자가 시공한 전기공사실적을 인정함 - 전기공사사업 등록일 이전 계약 및 영업정지 기간 중 공사실적은 제외 - 공사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에 물품구매나 자재납품 등으로 기재되어 설치공사로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복합시공인 경우 전기공사실적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p>
<p>소방시설공사업</p>	<p>■ 공사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p> <p>▶ 공사실적: 해당업체의 수급금액(하수급금액 포함, 하도급금액 제외)</p> <p>- 공사사업 영위기간 3년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합산해 3으로 나눈 금액 - 공사사업 영위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당해 기간 공사실적을 합산해 당해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공사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 :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액</p>
<p>정보통신공사업</p>	<p>■ 공사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p> <p>▶ 공사실적액: 당해 공사사업자의 수급금액(하수급금액 포함, 하도급금액 제외)</p> <p>- 공사사업 영위기간 3년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합산해 3으로 나눈 금액 - 공사사업 영위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당해 기간 공사실적 합산해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공사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 : 당해 기간 공사실적액</p>

Ⅲ.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 공사실적평가액은 위의 표에서 조사된 공사업 모두 연평균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중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사업 영위기간 3년 이상을 전제시 최근 3년간 해당업종 공사실적액 합산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액의 75%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공사업 영위기간에 따른 분류는 전기공사업은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총 4단계이며, 소방시설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총 3 단계로 나뉜다.

○ 기술능력 평가액

건설업 기본법	<p>■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보유기술자수×30/100)+ (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p> <p>▶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 매년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고시함.</p> <p>*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적용된 1인당 평균생산액=761백만원</p> <p>* 기술자의 등급별로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보유기술자계수-초급기술자:1, 중급기술자:1.15, 고급기술자: 1.3, 특급기술자: 1.5, 기술사: 1.7, 기능장: 1.5, 그 외: 1</p> <p>▶ 퇴직공제불입금=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p> <p>▶ 기술개발투자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건설과 관련된 건설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매년 건설협회에 실적신고(2차) 시 신고하는 금액(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투자비 내역서를 제출함)</p>												
전기공사업	<p>■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전기공사기술자가중치합계+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30/100+교육훈련 실적평가액</p> <p>▶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p> <p>▶ 보유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등급별 보유전기공사기술자수×등급별 보유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r> <th style="padding: 2px;">보유전기공사 기술자</th> <th style="padding: 2px;">기술사</th> <th style="padding: 2px;">특급전기공사 기술자</th> <th style="padding: 2px;">고급전기공사 기술자</th> <th style="padding: 2px;">중급전기공사 기술자</th> <th style="padding: 2px;">초급전기공사 기술자</th> </tr> <tr> <td style="padding: 2px;">가중치</td> <td style="padding: 2px;">3.0</td> <td style="padding: 2px;">2.5</td> <td style="padding: 2px;">2.0</td> <td style="padding: 2px;">1.5</td> <td style="padding: 2px;">1.0</td> </tr> </table> <p>▶ 기술개발투자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제출자료가 통계자료로서 불충분한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업계 평균비율은 발표하지 않을 수 있음.</p> <p>▶ 교육훈련 실적평가액 : 최근 1년간 2일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후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자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1 -이수자가 4명 또는 5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2 -이수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3 	보유전기공사 기술자	기술사	특급전기공사 기술자	고급전기공사 기술자	중급전기공사 기술자	초급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	3.0	2.5	2.0	1.5	1.0
보유전기공사 기술자	기술사	특급전기공사 기술자	고급전기공사 기술자	중급전기공사 기술자	초급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	3.0	2.5	2.0	1.5	1.0								
소방시	<p>■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인력가중치합</p>												

<p>설 공 사 업</p>	<p>계×30/100)+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p> <p>▶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함.</p> <p>▶ 보유기술인력 가중치</p> <p>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함</p> <table border="1" data-bbox="347 539 1329 638"> <thead> <tr> <th>보유기술인력</th> <th>특급기술자</th> <th>고급기술자</th> <th>중급기술자</th> <th>초급기술자</th> </tr> </thead> <tbody> <tr> <td>가중치</td> <td>2.5</td> <td>2</td> <td>1.5</td> <td>1</td> </tr> </tbody> </table> <p>*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 위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함</p> <p>▶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p>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p>정 보 통 신 공 사 업</p>	<p>■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기술인력가중치합계×30/100)+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p> <p>▶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함.</p> <p>▶ 보유기술인력가중치</p> <table border="1" data-bbox="347 1173 1417 1317"> <thead> <tr> <th>보유 기술인력</th> <th>기술사</th> <th>특급 기술자</th> <th>고급 기술자</th> <th>중급 기술자</th> <th>초급 기술자</th> <th>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th> </tr> </thead> <tbody> <tr> <td>가중치</td> <td>2.5</td> <td>2</td> <td>1.5</td> <td>1</td> <td>0.5</td> <td>0.25</td> </tr> </tbody> </table> <p>* 보유기술인력(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한다)은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p> <p>▶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정보통신공사사업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p>	보유 기술인력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0.5	0.25
보유 기술인력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0.5	0.25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모두 공통된 사항이다.
-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모두 보유기술인력에 등급별로 계수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택한다. 건설업은 1.0~1.7까지의 총 6단계, 전기공사업은 1.0~3.0까지의 총 5단계, 소방시설공사업은 1.0~2.5까지의 총 4단계, 정보통신공사업은 0.25~2.5까지의 총 6단계로 건설업의 가중치 폭이 가장 작고, 전기공사업이 가장 크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초급기술자의 가중치는 다

Ⅲ.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른 공사업이 1.0에 반해 0.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의 가중치가 0.25로 기능계 기술자의 가중치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 건설업 3년간의 기술개발 투자액을 포함하고,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전년도 기술개발 투자액을 적용한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은 30/100로 적용되어 다른 공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적용률이다.
- 전기공사업은 다른 공사업과 다르게 교육훈련 실적평가액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최근 1년간 2일 이상 전기공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자의 수에 따라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의 0.1에서 0.3까지 적용한다.

○ 경영평가액

건 설 산 업 기 본 법	<p>■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경영평점×75/100 → 재무제표를 참조해서 산정함.</p> <p>▶ 실질자본금 : 총자산(유동자산+고정자산)-총부채(유동부채+고정부채)-겸업비율금액</p> <p>▶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p> <p>* 경영평점=0~3범위로 제한, 신규업체의 경우 경영평점=1점</p> <p>* 매년 대한건설협회에서 각각에 대한 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고시함.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적용된 가중평균비율 유동비율=133.67%/ 자기자본비율=41.49%/ 매출액순이익률=5.93%/ 총자본회전율=0.85회</p> <p>▶ ▶ 유동비율 평점= 유동자산/유동부채×100(%)의 값을 업종별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값 유동자산=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부채=1년 이내 갚아야하는 부채 ex) ①유동자산 2,500,000,000 유동부채 30,000,000 일 때 ②2,500,000,000/30,000,000=83.33×100=8333% ③2012년도 업종별 가중평균비율 133.67%을 나누어줌 ④따라서 8333%/133.67%=62.34 ⑤3을 초과하는 경우 평점은 3(3점 만점)</p> <p>▶ ▶ 자기자본비율 평점= 자기자본/총자본×100(%)의 값을 업종별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값 ex) ①자기자본 1,200,000,000 총자본 3,000,000,000 일 때 ②1,200,000,000/3,000,000,000×100=40% ③2012년도 업종별 가중평균비율 41.49% ④따라서 40/41.49=0.96(점)</p> <p>▶ ▶ 매출액순이익률 평점= 법인세 또는 소득세차감전 순이익/매출액×100(%)의 값을 업종별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값</p> <p>▶ ▶ 총자본회전율 평점= 매출액/총자본의 값을 업종별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값</p>
전 기 공 사업법	<p>■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경영평점+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50/100</p> <p>▶ 실질자본금 총자산-총부채-겸업비율</p>

	<p>▶ ▶ 검업비율: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전기공사실적을 공제한 비율 (총매출액-전기공사실적)/총매출액×100으로 산정함.</p> <p>▶ 경영평점=(부채비율평점+유동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자산회전율평점)/4</p> <p>▶ ▶ 부채비율평점 :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공사업체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4미만인 경우에는 “5”, 0.4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4”, 0.9이상 1.9미만인 경우에는 “3”, 1.9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함.</p> <p>▶ ▶ 유동비율평점 :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이상인 경우에는 “5”, 0.9이상 1.2미만인 경우에는 “4”, 0.7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3”, 0.7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함.</p> <p>▶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매출액 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이상인 경우에는 “2.5”, 0.4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2”, 0.1이상 0.4미만인 경우에는 “1.5”, 0.1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함.</p> <p>▶ ▶ 자산회전율평점 :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 자산회전율로 나눈 값이 1.4이상인 경우에는 “2.5”, 0.6이상 1.4미만인 경우에는 “2”, 0.1이상 0.6미만인 경우에는 “1.5”, 0.1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함.</p>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p>■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의 평점+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70/100</p> <p>▶ 실질자본금 : 총자산(유동자산+고정자산)-총부채(유동부채+고정부채)-검업비율금액</p> <p>▶ 실질자본금 평점</p> <table border="1" data-bbox="347 1227 1422 1391"> <thead> <tr> <th>실 질 자본금의 규 모</th> <th>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th> <th>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th> <th>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th> <th>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th> <th>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평점</td> <td>1.2</td> <td>1.5</td> <td>1.8</td> <td>2.1</td> <td>2.4</td> </tr> </tbody> </table> <p>▶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p>	실 질 자본금의 규 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실 질 자본금의 규 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법	<p>■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경영평점+담보 제공,현금 예치 또는 출자금액×50/100</p> <p>▶ 실질자본금 : 총자산(유동자산+고정자산)-총부채(유동부채+고정부채)-검업비율금액 15억원 초과 = 15억원으로 산정</p> <p>▶ 경영평점 : (부채비율평점+유동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3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산정함</p> <p>▶ ▶ 부채비율 평점= 해당 공사업체자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5 이상 0.75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5이상 1.25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1.25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p> <p>▶ ▶ 유동비율 평점= 해당 공사업체자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p>												

8.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순이익률 평점 = 해당 공사업자의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담보 제공, 현금 예치 또는 출자금액 <p>조합출자금액 = 신청일 현재 출자한 좌수에 해당 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p>
--	---

<표 10> 경영평가액 타법비교

공사업종	평가항목 비교			
건설업	실질자본금 (총자산-총부채-겸업비율금액) (공통)	경영평점	-	75/100
전기공사업		경영평점	출자, 예치, 담보금	50/100
소방시설공사업		실질자본금의 평점	출자, 예치, 담보금	70/100
정보통신공사업		경영평점	출자, 예치, 담보금	50/100

- 타법 시공능력평가 항목 중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은 경영평가액이 포함하고, 소방시설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평가액을 포함한다.
- 타 공사업 공통으로 실질자본금 항목을 기반으로하고 공사업에 따라 경영평점 또는 실질자본금의 평점을 적용한다. 그리고 건설업을 제외한 세 개의 공사업은 출자, 예치, 담보금을 포함하여 50/100~75/100의 비율을 적용한다.

<표 11> 경영평점 타법비교

공사업종	경영평점항목 비교				
건설업	유동비율평점	자기자본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률평점	자산회전율평점	항목합계/4
전기공사업		부채비율평점		자산회전율평점	항목합계/4
정보통신공사업		부채비율평점		-	항목합계/3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경영평가항목은 세부적인 평점 계산방식은 다르나 유동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률평점은 공통으로 적용하며, 항목합계의 3~4로 나누어 계산한다.
- 건설업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평점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평점을 적용한다.
-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은 자산회전율평점을 적용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o 경력평가액

소방시설 공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공사업 영위기간 평점×20/100 ▶ 공사업 영위기간 평점
--------------	---

	공사업 영위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평점	1.5	1.6	1.7	1.8	1.9
정보통신 공사업법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 20/100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공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5	1.6	1.7	1.8	1.9

- 소방시설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공통적으로 공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1.0에서 2.0까지 평점을 실적평가액에 적용하며, 건설업의 경우 신인도평가액에 영업기간비를 항목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o 신인도평가액

건설산업 기본법	■ 신인도평가액 = (3년간 연평균 실적액 × 협력가점비율) + (3년간 연평균 실적액 × 영업기간비율) - (3년간 연평균 실적액 × 별점감점비율) ≤ 3년간 연평균 실적액의 25% ▶ 협력가점비율(+) -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 = 2% - 건설업자간 협력한 자 = 6,5,4,3% -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한 자 = 2%이내 -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자 = 10%이내 ▶ 영업기간비율(+) - 일반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자 = 1% / 10년이상 20년 미만인 자 = 2% / 20년이상인 자 = 3% ▶ 별점감점비율(-) -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 1% - 부실별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점수 이상인 자 = 3%이내 - 건설업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자 = 3% 2배 초과 재해를 발생시킨 자 = 5% - 3년 이내 부도가 발생한 자 = 5% -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불량한 자 = 2%이내 -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25%
	■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함
전기공사 업법	

8.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 신인도 반영비율 (2012년 기준)	
구 분	신 인 도 반영비율
가) 최근 3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기관	+ 4/100 + 3/100 + 2/100
나)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 2/100
다) 공사업 영위기간이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5년이상 10년미만인 자 ② 10년이상 15년미만인 자 ③ 15년이상인 자	+ 1/100 + 2/100 + 3/100
라) 최근 1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정부투자기관	- 3/100 - 2/100 - 1/100
마) 최근 1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1/100×영업정지기간(월수)
바) 삭 제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감액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① 직전 영업년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1배이상 2배미만의 재해를 발생시킨 자의 경우 ② 직전 영업년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2배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자의 경우	- 2/100 - 3/100
아)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감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 2/100
자) 최근 3년간 노동부로부터 지원 승인받은 전국규모의 전기공사관련 기능경기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① 1위 수상 ② 2위 수상 ③ 3위 수상	+ 3/100 + 2/100 + 1/100
소방시설 공사업법	<p>■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반영비율합계</p> <p>▶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 : 3%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3%) / 그 밖의 표창 (+2%) -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 : 2% -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자 : 2% <p>▶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

	<p>은 사실이 있는 자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 : 2% -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2% 3개월 초과 : 3% - 최근 1년간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정보통신 공사업법	<p>■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신인도반영비율합계</p> <p>▶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 : 3% -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임무고지된 업체 : 3% - 공사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 : 2% -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 : 2% <p>▶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 : 2% -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최근 1년간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신규등록·양도·합병 후 공사업영위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로 평가받은 자로서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가 전년도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 3%

- 신인도평가액은 타 공사업 공통으로 실적평가액 또는 연평균 실적액에 신인도 반영비율(가점 또는 감점)의 합계를 적용한다. 신인도 반영비율은 각 공사업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며, 전기공사업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업의 신인도평가액은 타법과 다르게 3년간 연평균 실적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방시설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경력평가액의 공사업영위기간 평점과 유사한 영업기간비율 항목을 포함한다. 이는 3년간 연평균 실적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

○ 수수료

건설산업 기본법	<p>■ 수수료</p> <p>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p>
-------------	--

⑧.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p>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11.5.24]</p> <p>*대한건설협회 프로그램 이용료 150,000원</p>						
<p>전기공사 업법</p>	<p>■ 수수료</p> <p>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p> <p>*한국전기공사협회</p> <table border="1" data-bbox="352 1211 1310 1339"> <tr> <td>시공능력평가 수수료</td> <td>금 액 : 100,000원</td> </tr> <tr> <td>회비납부</td> <td>· 납부한도 : 최저하한선 50만원, 최고상한선 3,000만원 · 납부금액 : 산출된 통상회비의 1,000원미만 절사</td> </tr> </table>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금 액 : 100,000원	회비납부	· 납부한도 : 최저하한선 50만원, 최고상한선 3,000만원 · 납부금액 : 산출된 통상회비의 1,000원미만 절사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금 액 : 100,000원						
회비납부	· 납부한도 : 최저하한선 50만원, 최고상한선 3,000만원 · 납부금액 : 산출된 통상회비의 1,000원미만 절사						
<p>소방시설 공사업법</p>	<p>■ 수수료</p> <p>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3]</p> <p>*한국소방시설협회</p> <table border="1" data-bbox="352 1749 1321 1921"> <thead>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시평 수수료</td> <td>100,000 원</td> </tr> <tr> <td>통상 회비</td> <td>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액 × 0.4/1,000 (천원미만절사, 하한 : 400,000원, 상한 : 4,00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금액	시평 수수료	100,000 원	통상 회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액 × 0.4/1,000 (천원미만절사, 하한 : 400,000원, 상한 : 4,000,000원)
구분	금액						
시평 수수료	100,000 원						
통상 회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액 × 0.4/1,000 (천원미만절사, 하한 : 400,000원, 상한 : 4,000,000원)						
<p>정보통신</p>	<p>■ 수수료</p>						

공사업법	<p>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p>[전문개정 2009.3.25]</p>
	<p>*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공능력평가 수수료(3만원) 납부</p>

- 타기관 법에서 모두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모두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3~15만원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

o 종합정보관리

건설산업기본법	<p>■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p>
전기공사업법	<p>■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Ⅲ.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p>정보</p> <p>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소방시설 공사업법	기준없음
정보통신 공사업법	<p>■ 제29조(공사업에관한 정보관리 등)</p> <p>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2. 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p>

-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제외한 타기관 법에서는 대부분 시공능력평가 서식에 의해 종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종합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사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정보를 관리·활용하여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모든 업자나 기관, 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내용의 적정성

- o 공사실적평가액

평가요소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업종 평균공사실적액
배점범위(계 100)	0
1) 공사업 영위기간 3년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2) 공사업 영위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당해기간의 공사실적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3) 공사업 영위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당해기간의 공사실적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 4) 공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 : 당해기간의 공사실적액	

- 문화재수리업체 공사실적평가액은 타법과 달리 문화재라는 진정성 때문에 공사실적평가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기술력, 자본력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업체를 평가해야 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재의 원형훼손 방지, 공사 품질확보, 부실시공 방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수리업종 평균공사실적액을 별도의 범위로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규제는 적당함.

o 자본금평가

평가요소	총자산에 총부채를 뺀 금액				
배점범위(계 100)	20%				
1) 자본금평가는 총자산에 총부채를 뺀 금액 (자본금평가액=총자산-총부채) ·총자산(유동자산+고정자산) ·총부채(유동부채+고정부채) 2) 자본금은 매년 12월말 결산된 재무제표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정 3) 자본금평가의 배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자본금 평가액	자본금평가액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자본금평가액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자본금평가액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자본금평가액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자본금평가액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8	18.5	19	19.5	20

- 문화재수리업체 신용도평가(자본금평가)는 총자산에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자본금은 매년 12월말 결산된 재무제표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배점범위는 20%(100% 기준)이 적당함.

문화재수리업체 경우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관련 유사 법령(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 운영하는 신용도평가보다 간략하게 총자산에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5단계 항목으로 자본금평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당함.

Ⅲ.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 기술능력평가

평가요소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배점범위(계 100)	60%			
<p>1)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보유기술인력 등급 가중치와 보유기술인력 인원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로 한다.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p> <p>2) 보유기술인력의 법 13조의2에 의해 1등급기술자, 2등급기술자, 3등급기술자, 기능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은 시행령 11조의2 별표(2-A) 기준에 따른다.</p> <p>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p>				
보유기술 인력 등급	수석기술자	책임기술자	선임기술자	기능자
가중치	2	1.5	1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등급	등급 분류 기준			
수석기술자	해당 자격분야 경력 15개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책임기술자	해당 자격분야 경력 7개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선임기술자	해당 자격분야 경력 0개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4) 보유기술인력의 인원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 인력 인원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가중치	10	8	6	

- 문화재수리업체 기술능력평가는 공사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달리 보유기술인력 등급 가중치와 보유기술인력 인원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로 한다.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술능력평가는 보유기술인력으로 평가되며 배점은 60%(100% 기준)가 적정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인력이 많아야 부실수리를 예방하고 문화재수리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능력평가를 최대한의 범위로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규제는 적당함.

○ 경력평가

평가요소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배점범위(계 100)	20%						
1)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0	5	8	10	12	15	20

- 문화재수리업체 경력평가는 7단계로 나눠 영위기간 평점 배점은 20점(100점 만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경영평점×70/100이며 소방시설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경영평가액은 실적평가액×공사업 영위기간 평점×20/100으로 산출된다. 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를 수리함에 있어 실질자본금 및 실적평가액인 금액으로 현대건축업체처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관리를 위해 공사업 영위기간으로 단계를 나눠 경력평가를 하는 것이 적당함.

○ 신인도평가

평가요소	신인도 반영 가점, 감점	
배점범위(계 100)	±10%	
1) 신인도 반영 가점 및 감점 합계는 ±10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반영 가점 및 감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내용		가점
문화재청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		+10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5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 및 표창 받은 자		+2
내용		감점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업자 평균재해율의 1배이상 2배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자		-5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
	3개월 초과	-3
최근 1년간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평가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10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		-5

- 문화재수리업체 신인도평가는 배점범위는 ±10%(100% 기준)이다. 공사관련 유사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대부분 운영내용은 같으며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평가 허위서류를 제출한자와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자 라는 내용

④.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이 감점내용에 추가 되었다. 추가된 2개 항목내용과 감점만 달리 구분한다. 총합계는 ±10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타기관 법령에서는 가점이 있지만 문화재의 특수성과 진정성의 관계로 가점은 타기관 법령에 비하여 적으며 문화재청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우수업체만 가점을 반영한다.

○ 문화재수리 능력평가 수수료(안)

*수리능력평가 수수료 : 금액 : 100,000원

*회비납부(통상회비) : ○ 납부한도 : 문화재공사 실적신고액 × 0.4/1,000
최저하한선 40만원, 최고상한선 3,000만원
○ 납부금액 : 산출된 통상회비의 1,000원미만 절사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평가 및 종합정보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처분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 거래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0만원

- 문화재수리 능력평가 수수료 및 회비납부는 타법에서 적용한 사항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고 관리하는데 적당한 금액임.
-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평가 및 종합정보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로 정하였으며, 과태료는 거짓으로 기록이나 작성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 능력평가 종합정보관리(안)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평가 서식을 기준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에 활용

-정보는 행정기관, 발주자 및 관련 업체에 제공

- 문화재수리 등의 시공능력평가 서식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정보관리에 활용하며 문화재수리 분야에서도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관리·활용하여 그 정보는 행정기관, 발주자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하며 또한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 제출건수 : 총5건
- 제출자 : 문화재수리업 5개 업체
-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능력평가(실적관리) 방법 및 절차
 - 시행규칙 제11조의2 ③ 법 제14조의 2 제3항 또는 5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등의 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위탁기관 홈페이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등 공시하는 방법에 의함.
 -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평가 지침
 - 배점범위 : 공사실적평가액(가중치 없음), 자본금평가 20%, 기술능력평가 60%, 경력평가 20%, 신인도 10%로 변경.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문화재수리능력평가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품질 향상이 기대됨

〈표 12〉 참고자료 : 관련 타법령과의 비교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④.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p>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p> <p>(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p> <p>(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p> <p>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p> <p>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p> <p>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p>
--	--	---

		<p>약서 사본</p> <p>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써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p> <p>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p> <p>나. 삭제</p> <p>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p> <p>3.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p> <p>4.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p> <p>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p> <p>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등록된 종합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p>
--	--	--

8.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p>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p> <p>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중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p> <p>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중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p> <p>⑥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p> <p>1.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

		<p>2.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p> <p>3. 삭제</p> <p>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p> <p>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p> <p>6. 삭제</p> <p>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p> <p>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p> <p>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6. 보유기술자수 <p>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 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 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25, 2002.9.18, 2007.12.31></p> <p>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p>
--	--	---

8.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p>탁을 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p>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p> <p>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p> <p>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p>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삭제 4. 건설사업관리실적 5.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
--	--	--

Ⅲ.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p>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고현황</p> <p>8.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p> <p>9.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p>
전기공사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② 생략</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 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생략</p>	-	<p>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삭제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p>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p>

		<p>지 아니하다.</p> <p>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p> <p>⑥ 지정공사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같음한다.</p> <p>⑦ 지정공사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p> <p>⑧ 지정공사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p> <p>⑩ 제9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	--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p>	<p>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생략</p>	<p>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p>

8.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p>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p>		<p>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p> <p>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p> <p>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p> <p>다.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p> <p>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p> <p>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p> <p>2. 평가를 받는 해외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p> <p>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p>
--	--	---

		<p>보유현황</p> <p>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 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p> <p>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p> <p>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 날까지로 한다.</p> <p>1.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양수·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p>
--	--	--

8.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p>한 경우</p> <p>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어 제4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p> <p>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p>
정보통신공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7조(공사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 상황 등 공사에 관한 정보와 공사업자의 공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자본금·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도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전 공사업자의 공사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p> <p>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p> <p>2.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p>	

	<p>을 양도하는 경우</p> <p>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해당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달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p> <p>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4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실적을 증빙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내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사본 나.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 	
--	--	--

3. 문화재수리 등의 능력 평가 및 공시

	<p>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 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다.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서</p> <p>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다만, 발주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파산·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2. 별표 4에 따른 신인도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p> <p>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p> <p>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p> <p>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인 감사한 회계서류</p>	
--	---	--

**4.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

4.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규제사무명	○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인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박왕희, 김성도, 정춘호 ○ 한국건축역사학회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약 70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약 70명 약 6,605명	"						
	관련부처	문화재청		-	"						
5.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문화된 기능을 문화재 수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하여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 유지가 필요함.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법 제11조1항의 단서 및 6항,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5조의2)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 분야의 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의 자격시험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할 수 있다.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전문교육이수 : 14시간 이상										
	↓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 : 신분증 사본,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교육수료증 사본, 증명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3cm×3cm 사진)										
	↓										
심사위원회의 심사 : 해당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과 담당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 구성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 문화재청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문화재수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므로 전통재료 및 기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자는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이하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재료와 기법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 따라서 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의 문화재수리 참여를 확대해서 문화재 수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표 13〉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보유여부 현황 (2013년 현재)

구분	문화재수리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											계
	두석장	칠장	목조각장	대목장	소목장	제와장	불화장	단청장	석장	번와장	배첩장	
지정종목												11개 종목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2	1	2	3	1	1	1	2	2	1	1	17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	1	13	6	6	12	-	2	8	1	-	1	50
소계	3	14	8	9	13	1	3	10	3	1	2	67
기능자 자격증 미소지자	2	10	3	2	11	1	3	7	-	-	1	40
해당 기능자 종류	철물공	철공	목조 각공	대목수	소목수	제와장	화공	화공	가공 석공	번와공	표구공	10개 종류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문화재 수리현장은 전통재료와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숙련된 기능을 문화재 수리 현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을 인정하여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

〈표 14〉 신규조문대비표

현행	제정안
<p><신 설></p>	<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p> <p>제11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이란 제2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말하며, 교육시간은 14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② 법제11조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90일 안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이하 “무형문화재 보유자”라 한다)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중 해당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과 담당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인정 해제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p> <p>제5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의 인정 신청) ①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 분야의 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의 자격시험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⑥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신설 강화 규제 내용
 - 현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 신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종목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경우,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의 자격시험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분석
 -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신청할 때에 자격증 발급과 관리에 발생하는 행정부담 외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편익 분석
 -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활용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문화재수리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수리 기능을 이미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하다.
- 특히 무형문화재의 지정종목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적절한 규제다.

3-2. 이해관계자 협의

- 제출건수: 총2건
- 제출자: 이의상(석장: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이돈호(생육칠장:강원도무형문화재 제17호)

4.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

○ 주요내용

이의상 : 이미 한식석공과 드잡이공 보유하고 있으며, 시험감독으로 입회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자격증이 필요치 않다.

이돈호 :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되는 것은 환영하나 하루 시험보면 되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3일이나 교육받을 필요는 없다. 하루 이하 교육이라면 고려 가능하다. 이미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격증은 필요치 않다.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이미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다.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수행해야 하는 전문교육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지 않다.